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의사 및 간호사와 관련되는 대학의 정원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40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윤 의원 등 29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발생함.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확대된 의대정원이 지역별로 부족한 의료공급과 필요한 의료 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의사 및 간호사의 양성과 관련된 대학의 학생 정원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 배정의 합리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의사 및 간호사의 양성과 관련되는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1)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 개정안                                                                                                                                                  |
|--------------------------------------------|------------------------------------------------------------------------------------------------------------------------------------------------------|
| 제32조(학생의 정원) (생략)<br><br><u>&lt;신설&gt;</u> | 제32조(학생의 정원)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br><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의 양성과 관련되는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현재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sup>2)</sup>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수의사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에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sup>3)</sup>

개정안은 이 중 의사 및 간호사의 양성과 관련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자 함.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 의결기구로 하고,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sup>4)</sup>되어 있음.

지금의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이 면허제로 운영되고, 의료인력 수는 관련 대학 정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일 위원회에서 의료인력과, 인력양성 관련 대학 정원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는 것은 논의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

또한, 2024년 8월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가 법정위원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 참고자료의 종이 출력물을 파쇄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할 경우 동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sup>5)</sup>으

---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의안번호 제2204438호, 김윤 의원 대표발의

로서 회의록 작성의무<sup>6)</sup>가 있는바, 이러한 논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의사 및 간호사와 관련된 대학의 학생정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규정<sup>7)</sup>에 반할 여지가 있음.

의사 및 간호사의 양성과 관련되는 대학의 학생정원 논의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은 교육부 소속으로 의과대학 배정심사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각 부처의 소관사무를 고려했을 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규정은 이미 의사, 간호사와 관련된 대학의 정원을 정할 때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을 규정<sup>8)</sup>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의료인력수급 추계위

- 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 9. <생략>
- 7) 「정부조직법」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교육,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8)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원회의 심의결과도 협의를 통해 학생정원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학생정원의 문제는 고등교육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정원의 결정권한은 교육부장관이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분야 대학 정원에 관한 업무는 정부조직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의 소관 사무이며, 교육부 장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이 제안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 범위와 교육부 장관의 직무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88 |